

KOREA
RESEARCH
INSTITUTE FOR
LOCAL
ADMINISTRATION



[목 차]

- I . 서론
- Ⅱ. 사회복지재정의 현안과 쟁점
- Ⅲ. 사회복지재정의 다각화 방안

지방자치 FOCUS 제80호(2014. 7)

내용문의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원 김성주

02-3488-7340 / sjkim@krila.re.kr

배포문의 발간 담당자(02-3488-7300)

본 내용은 한국지방행정연구원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볼 수 있습니다.

www.krila.re.kr



김성주(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원)



I. 서론

- 최근의 사회복지서비스는 저소득자,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공공부조에만 머무는 사회복지의 개념이 아니라 사회적 양극화로 인한 사회통합적 서비스, 저출산·고령화의 심화에 대응한 출산율 제고 및 노령연금 확대, 사회적 위험요인의 해결과 맞춤형 서비스 제공 등 국민의 질 향상을 위한 '서비스'인 사회복지서비스의 개념으로 바뀌어가고 있음
- O 이러한 환경변화에 따라 2013년 9월 말에 많은 제도의 변화가 있었음
 - 먼저 기초연금법 제정안이 입법예고 되었는데 본 연구자의 추산에 의하면 기초연금제도의 도입에 따라 2014년도 한 해에만 지방비가 약 1조 2,000억 원 정도 추가 소요될 전망임
 - 기초생활보장제도도 14년 만에 개편이 되었는데 보건복지부 예측에 의하면 수급대상이 140만 명 → 220만 명(최대 110만 가구)까지 확대될 것임
 - 영유아보육사업의 기준보조율을 10%p 인상했지만 사회정책변화와 사업대상 확대에 대응한 보전이 아니라 취득세수 감소에 따른 최소한의 대책인 것임
- O 그렇다면 현재의 사회복지재정에는 이상의 내용들이 추진될 수 있는 수단으로서 사회복지환경과 정책의 변화가 반영되어 있는가?
 - 사회복지비와 관련한 기사들이 종종 언론상에 오르내리며 소란스럽고 지방재정 관련 회의가 있을 때마다 사회복지 관련 주제가 빠지지 않는 것을 보면 그렇지 못한 듯함
- 현재의 사회복지재정 상황은 지방에서 주요 3개 복지사업(영유아보육, 기초(노령)연금, 기초생활 보장)에 대해 매칭해야 하는 지방비만으로도 지방채 발행 등을 염두에 두어야 할 정도로 힘겨운 상황으로서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지역사회서비스를 발굴해서 추진하기란 쉽지 않음
- 본 글에서는 이상과 같이 급변하고 있는 사회복지환경과 폭증하는 사회복지비에 대해 근본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현재의 사회복지비 운영상황을 재점검해보고 사회복지재정의 다각적인 운영 방안을 제시해 보고자 함

¹⁾ 본 글은 '김성주, 사회복지분야 국고보조금의 개선방안, 2013'의 일부를 발췌하여 요약 재정리하였음

Ⅱ. 사회복지재정의 현안과 쟁점

- 1. 사회복지사업의 지방비 증가로 인한 자체사업의 감소
- O 사회복지환경의 변화에 따라 국민 개개인별 맞춤형 서비스를 위한 지역서비스의 중요성이 법에 반영되고 이에 따라 지방의 역할이나 책임도 강조되고 있지만 사업의 추진수단인 사회복지재정은 이러한 환경변화를 반영하고 있지 못함
- 2005년부터 2013년까지 9년간 연도별 사회복지비 비중을 살펴보면 중앙의 총 지출은 6.3%,
 중앙의 복지지출은 2.4%, 지방의 총 지출은 4.8% 증가한 반면 지방의 사회복지비 지출은 9.3%나 증가했음
- 실제로 2008년부터 주요 복지사업들이 매년 신설되었고 사업규모 또한 확대되었는데 2008년에 기초노령연금, 2009년에 양육수당, 2010년에 장애인연금이 신설되었음
 - 사업 신설에 따라 기초노령연금에 매칭해야 하는 지방비는 2008년에 8,000억 원에서 2013년에는 1조 1천억 원으로 증가하였고 장애인연금 지방비 또한 2010년에 733억 원에서 2013년에 1,681억 원으로 2배 이상 증가하였음
 - 양육수당 지방비는 2009년 364억 원이던 것이 2013년에 9,544억 원으로 무려 26배가 증가하였고, 영유아보육료 또한 2010년보다 2013년에 9,000억 원이 증가한 상황임

〈표 1〉 국가 주요 복지시책 확대에 따른 지방비 부담 현황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전년대비)
'08년	기초노령 연금 신설	0.8조	1.1조	1.0조	1.0조	1.0조	1.1조	∱ 624억
'09년	양육수당 신설	_	364억	711억	971억	1,112억	9,544억	↑ 8,432억
'10년	장애인연금 신설	_	_	733억	1,420억	1,435억	1,681억	↑ 246억
'11년	영유아보육료 확대	_	_	1.8조	2.0조	2.4조	2.7조	↑2,109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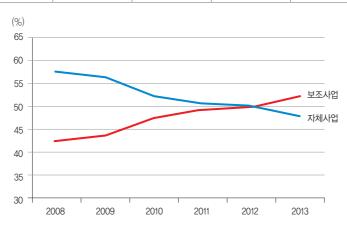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2013

- 상황이 이렇다 보니 지방자치단체는 자체사업을 축소하는 등의 방식으로 지방비를 마련하고 있는데 이는 자치단체의 특성에 맞는 재정운용에 큰 압박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최근 5년 사이 자치단체의 정책사업 중 보조사업의 규모는 급격히 증가(2008년 42.6% → 2012년 52.0%)한 반면 자체사업의 규모는 점점 감소(2008년 57.4% → 2012년 48.0%)하고 있는 것임

〈표 2〉 자치단체 정책사업 중 자체사업·보조사업 비중

(단위 : 조원, %)

구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정책사업	100.3	111.6	112.9	112.5	120.7	125.0
자체사업	57.6	62.8	59.2	57.0	60.6	60.0
	(57.4)	(56.2)	(52.4)	(50.7)	(50.2)	(48.0)
보조사업	42.7	48.8	53.7	55.5	60.1	65.0
	(42.6)	(43.8)	(47.6)	(49.3)	(49.8)	(52.0)



주 : 당초예산 기준

자료: 지방자치단체 예산개요('08~'12), 지방자치단체 통합재정개요('13)

2. 영유아보육사업 보편적서비스화의 미반영에 따른 지방부담 증가

- 최근 사회복지사업과 관련하여 논란의 중심에 있는 영유아보육사업에 대해서 국가의 사무냐, 지방의 사무냐라는 논쟁이 있지만 2005년 이후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법'에 의해서 국가의 사무처럼 정책역량이 이 사업에 집중이 되고 있는 상황임
 - 즉, 이제 영유아보육사업은 사회안전망이 아니라 보편적 사회서비스로서 중앙의 정책결정에 따라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하는 사업으로 변화되었다는 것임
- 사업성격의 변화는 지원대상의 변화를 통해서도 알 수 있는데 2008년~2013년 동안 매년 소득기준 등 지원조건이 완화되어 수혜자가 지속적으로 확대되었음
 - 2008년에는 차상위계층까지만 보육료 전액을 지원했었으나 2009년에 소득하위 50%까지 지원했고 2011년에는 소득하위 70%까지 확대하였음
 - 2009년에는 공공시설에 가지 않는 영유아도 지원하는 양육수당까지 신설되었음
 - 2013년에는 만 3~5세는 보육료 전액을 지원하고 만 0~2세는 소득하위 70%까지 전액 지원하며, 소득상위 30%는 본인부담금 제도를 도입, 보육료의 일부만 지원하는 것으로 변경되어서 지방재정의 부담은 가속화될 전망임
- 이렇다 보니 아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8년~2013년 사이에 지방예산의 평균 증가율은 4.4%, 사회복지비 증가율은 11.6%인 반면 영유아보육비의 평균 증가율은 34.7%에 이르고 있음
- 이것을 다시 영유아보육대상이 급증하기 시작했던 바로 전 해인 2008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2013년도에 지방예산은 23.5%, 사회복지비는 72.4% 증가한 반면 영유아보육비는 무려 약 329.5%나 증가하였고 이에 매칭해야 하는 지방비 또한 6년 전에 비해 329.4%나 증가하였음

(표 3) 2008~2013년 0~5세 보육예산(확정내시 기준)

(단위: 조원, %)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평균 증가율
	지	방예산	125.0 (-)	137.5 (10.0)	139.9 (11.9)	141.0 (12.8)	151.1 (20.9)	154.4 (23.5)	4.4
	사회복지비		21.7 (–)	24.1 (11.1)	26.5 (22.1)	28.5 (31.3)	30.9 (42.4)	37.4 (72.4)	11.6
(영유(아보육비	1.6488 (-)	2,6842 (62,7)	3.4819 (110.2)	4.1032 (148.9)	5.0545 (206.6)	7.0808 (329.5)	34.7
		국 비	0.8079 (–)	1.3146 (62.7)	1.6979 (110.2)	2.0244 (150.6)	2,4939 (208,7)	3.4703 (329.5)	34.7
		지방비	0.8409 (–)	1.3696 (62.9)	1.7840 (112.2)	2.0788 (147.2)	2.5606 (204.5)	3.6105 (329.4)	34.8

주: - 괄호()안은 2008년을 100으로 했을 때 증가비율

- O 이처럼 사회환경과 정책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으로 인한 영유아보육사업 쟁점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첫째, 가정양육수당 확대에 따라 지방비 부담 또한 증가하였는데 2012년 가정양육수당의 총 지출규모는 전년 대비 1조 928억 원(511.0%) 증가한 1조 3,066억 원으로 추정되며, 이 중 지방비는 5.682억 원 증가한 6.794억 원씩 각각 부담할 예정으로 지방비 부담이 더욱 증가한다는 것임
 - 둘째, 보육료 지원대상 범위가 일부 계층에서 전 계층 무상보육으로 확대됨에 따라 지역의 영유아 보육이 아닌 전국적 의무 무상 보육이므로 기준보조율을 기초생활보장급여 수준으로 인상해야 함

- 3. 점증하는 기초(노령)연금으로 인한 지방부담 증가
- 전술한 바와 같이 2008년에 공적 노후소득 보장의 사각지대를 완화하고, 노후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기초노령연금이 신설되었는데 3단계에 걸쳐 수급자 수가 지속적·단계적으로 확대되어 왔음
 - 즉, 2008년 6월까지는 수급대상이 70세 이상 노인의 60%였으나, 7월부터는 65세 이상으로 대폭 확대되면서 6개월 사이 194만 명에서 290만 명으로 49.5%가 증가하였음
 - 2009년부터는 65세 이상 노인의 70%까지 확대되었고 지급인원은 373만 명, 수급률이 대상자의 67.7%까지 상승하다보니 기초노령연금에 매칭해야 하는 지방비도 수직 상승하게 되는데 2012년 대비해서 2013년도에 624억원이 증가하였음
- 또한 2009년 이후에도 2011년도 387만 명 → 2012년도 402만 명으로 증가하였고, 월 지급액도 2011년 4월 ~ 2012년 3월까지 91,200원 → 2012년 4월 ~ 2013년 3월 94,300원 → 2013년 4월부터는 96,800원으로 지속적으로 상향되었음
- 새로 도입될 기초연금과 관련해서도 현행 기초노령연금과의 차이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쟁점이 있음
 - 먼저 기초노령연금의 급여수준은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 3년간 평균소득(A값)의 5% 수준으로 하고 '28년까지 A값의 10%로 단계적으로 인상하되, 구체적인 시기 및 방법은 국회 내 연금 제도개선위원회를 설치·논의(기초노령연금법 부칙8385호 제4조의2)하도록 되어 있음
 - 반면 기초연금은 A값의 10%에 상당하는 금액(20만 원)으로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2013년 기준 기초노령연금일 때 96,800원 391만 명에서 기초연금이 되면서 최대 20만원 353만 명, 15~20만 원 20만 명, 10~15만 원 18만 명으로 증가하게 됨

〈표 4〉 기초노령연금 및 기초연금 수급액 및 수급자 수

연금액	기초노령연금 수급자	기초연금 수급자
20만 원	_	353만 명
15~20만 원	_	20만 명
10~15만 원	_	18만 명
9.7만 원	391만 명	_
제외(소득 상위 30%)	207만 명	207만 명

주: 2012년 12월 인구(65세 이상 노인 598만 명) 기준

자료: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도입계획, 2013

○ 따라서 기초노령연금사업과 관련해서는 지금까지 사실 큰 논쟁사항이 없었지만 이번 기초 연금법의 기초노령연금법 대체로 인한 사업비 대폭 확대에 따라 영유아보육사업과 함께 중앙과 지방 간의 큰 논쟁거리가 되었음

Ⅲ. 사회복지재정의 다각화 방안

1. 사회복지비 누수 관리

○ 감사원(2013) 감사결과에 의하면 사망자에게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하고(639억 원), 공무원 수작업 입력오류(538억원, 장애등급, 건강보험료, 나이 입력 오류)가 차단되지 않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칸막이 행정²¹으로 인해 4 028억 원이 3년간 누수된 것으로

²⁾ 보건복지부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 등 6개 복지사업(국민기초생활보장, 기초노령연금, 장애인연금, 차상위자활, 차상위본인부담 경감, 차상위장애수당)에 대해 금융정보를 소득·재산에 반영하여 수급자격을 판정하도록 하고 수급자의 동의를 받아 조회할 수 있는 금융정보 범위를 개별 법령에 정하였다. 그런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시행령 제3조에서는 이자소득을 실제소득에 포함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동법 시행령 제36조 등에서 각 시·군·구가 조회할 수 있는 금융정보 제공 동의 범위에서 이자소득을 제외하도록 되어 있다. 그 결과 예금 등 보유자 430여만 명의 이자소득 1.9조여 원이 수급자격 판정 시누락되고 기초노령연금 수급자 중 정기예금 보유자 208만여 명에 대해 이자소득을 포함하여 수급자격·급여액을 모의분석한 결과 15.3만여 명(7.4%)에게 연간 959억 원(3년간 2.877억 원)이 과오지급된 것으로 추정된다(감사원, 20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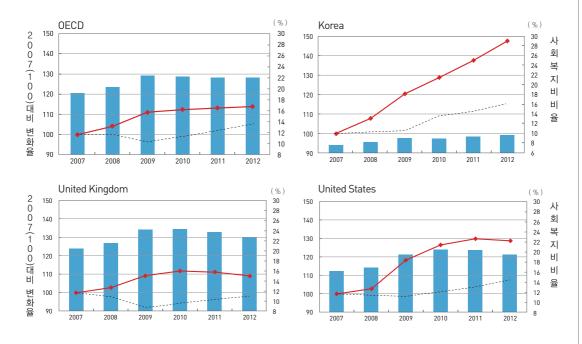
나타났음

- 이러한 누수현상은 모든 복지사업에 대해 지방비를 매칭해야 함을 감안할 때 지방예산 또한 동시에 낭비된 것이고, 불안정한 시스템과 관리체계 미비에 의한 결과임
- 일본의 경우도 최근 사회복지비 누수로 인한 문제들이 쟁점화되어 있는데 특히 생활보호사업 (우리나라의 기초생활보장+기초(노령)연금사업)의 부정수급에 대한 대책들이 논의 중에 있음
 - 일본 후생노동성에 따르면 2010년 생활보호사업의 부정수급 건수는 전국적으로 25,355건 이며, 부정수급 금액은 128억 746만 엔으로 조사되고 있음
- O 어느 나라나 사회복지사업이 다양하고 그 대상이 넓은 지역에 퍼져 있으며, 개인을 대상으로 한 사업들이 많음에 따라 사회복지비 누수현상들은 항상 존재할 수밖에 없으며 이들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함
- 사회복지비의 누수관리를 위해서는 첫째, 보건복지부가 사통망의 모니터링을 지속하여야 하는데 일반적으로 공공정보시스템을 도입하여 운영하는 과정에서 오류들이 발생하기 마련이고 안정화되기까지는 상당기간이 소요됨
 - 따라서 관리주무부처는 지속적으로 시스템을 관리하고 지자체에 대한 지원을 하는 등의 모니터링을 해야 할 것임
- O 둘째, 사회복지담당 공무원들의 확충과 복지업무의 효율적 운영이 필요함
 - 현재 각종 복지사업의 수급자격 등 각 항목을 사회복지담당 공무원들이 모두 수작업으로 입력하고, 복지부에서 불필요한 자료까지 지자체에 제공함으로써 제공된 자료의 90% 이상을 삭제하는 등 업무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임
 - 2012년 말을 기준으로 했을 때 복지인력 부족분이 6,930명으로 추산(보건복지부, 2012)되고 있음
 - 따라서 안전행정부와 보건복지부에서는 지자체가 복지인력수급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그대로 실천해 갈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할 것임

2. 사회보장 목적세 신설 검토

- 우리나라의 사회복지 지출 규모는 OECD 국가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에 있으나, 아직 노인에 대한 연금지출이 본격화되지 않았고 또 보건, 의료비용 역시 상승초기에 있기 때문에 향후 사회복지지출이 크게 상승할 가능성이 있음
- 2009년을 기준으로 OECD 국가들의 GDP 대비 사회복지지출을 살펴보면 가장 높게는 32.1%(프랑스)에서 9.4%(한국)까지 다양한데 OECD 평균은 22.1%로서 우리나라와 상당히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음
-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사회보장기금을 합한 일반정부(General government)지출을 기준으로 OECD 평균과 우리나라를 비교하면 우리나라는 10개의 분야 중 국방, 경제업무, 주택 및 지역개발, 교육분야의 비중은 OECD 평균보다 높은 반면 보건, 사회복지의 비중은 낮음을 알 수 있음
- 우리나라와 OECD 주요 국가와의 GDP 대비 사회복지재정 비중 추이를 비교해 보면 OECD 평균이 2000년에 18.9%이었던 반면 우리나라는 4.8%에 불과하여 우리나라가 약 1/4밖에 안되는 수준이었음
 - 그러나 2007년을 기준으로 하면 OECD 평균이 19.3%로 7년 전에 비해 약 0.4% 증가하였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2.7%나 상승, OECD 평균이 약 2.6배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음
- 〈그림〉은 2007을 기준(100)으로 변화추이를 봤을 때 OECD 국가와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지출 규모 변화 및 GDP 성장률을 비교한 것임
 - OECD 국가들의 평균 사회복지지출 규모가 GDP 성장률보다 낮은 중가율을 보이는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는 사회복지지출규모가 GDP 성장률보다 훨씬 더 높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음

〈그림〉 OECD 국가와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지출 변화 및 GDP 성장률 비교



- 주) ··· (점선): 2007년 기준(100) GDP 성장률 변화 — (실선): 2007년 기준(100) 사회복지지출 변화 자료) Adema, W.P. Fron and M. Laidaique, 2011.
- 또한 전술한 바와 같이 영유아보육사업이 보편적서비스가 되고 기초연금 대상 및 지원규모의 확대뿐만이 아니라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사회로의 진입을 눈 앞에 두고 있는 등 사회복지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라는 것은 자명한 일임
-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응할 별도의 재정지원 수단을 준비하고 있지 않다는 것은 이제 지방 뿐만이 아니라 국가 전체적으로 더욱 큰 문제로 확대될 수 있음

- O 사회복지비 누수 관리와 같이 불필요한 예산낭비를 절약하여 복지수요에 대응할 수도 있을 것이나 이는 단기적이고 임시방편적인 대안에 머무를 수밖에 없으므로 보다 근본적이며 지속적인 대안 차원에서 새로운 조세의 신설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음
- 3. 사회복지재정 운영의 지방 자율성 부여
- 복지사업규모가 기하급수적으로 팽창하고 있는 가운데 지역의 복지정책이 없다는 지적이 있음(이재원, 2013)
- 일본 아동수당제도(0~3세 이하)의 경우 삼위일체 분권개혁에 따라 국가와 지방의 재원분담율에 변화가 있었는데 자영업자에 대한 보조금 분담률이 국가: 도도부현: 시정촌이 각각 4/6: 1/6: 1/6에서 1/3: 1/3: 1/3로 바뀌었고 근로자에 대해서도 2/10: 0.5/10: 0.5/10에서 1/10: 1/10: 1/10으로 변화되었음
- 반면 지방자치단체의 재량이 대폭 확대되었는데, 아동수당제도의 경우 분권개혁 전에는 국가가 정한 기준에 맞게 실시해야 했으나, 분권개혁 후에는 국고지원율이 낮아지면서 국가의 기준은 최소한으로 하고 해당 지자체의 지역적 특성과 주민의 요구를 최대한 반영하여 자주적인 재량권을 가지고 사업을 실시하게 되었음
- 생활보호제도도 지방분권 개혁 전에는 기관위임사무제도에 따라 국가가 지자체를 국가의 일선기관으로 취급하여 지자체 업무에 대해 포괄적으로 지도하고 감시·감독했었음
 - 그러나 개혁 후에는 기관위임사무제도를 폐지하여 지자체에 대한 관여범위를 최소한으로 축소하였고 지자체의 입장에서도 국가가 정한 기준에 맞게 사업을 실시하였으나 개혁 후에는 재량이 확대되었음

〈표 5〉 삼위일체 개혁으로 인한 일본 지방정부의 재량 변화

구분		삼위일체 분권개혁 전	삼위일체 분권개혁 후		
	국가	전국 일률적인 기준을 설정	전국 일률적인 기준 설정		
아동수당 제도	지방 자치단체	국가가 정한 기준에 맞게 사업 실시	국가가 정한 기준을 최소한으로 반영하고, 해당 지역의 특성과 요구를 반영하여 자주적으로 재량을 발휘하여 사업 실시		
생활보호 제도	국가	① 일률적인 생활보호기준 및 처리기준 규정 ② 지자체를 국가의 기관으로 취급하여 지자체의 업무에 대해 포괄적으로 지도하고 감시·감독 (기관위임사무제도)	① 일률적인 생활보호기준 및 처리기준 규정 ② 기관위임사무제도 폐지로 인해 지자체의 업무처리 관여범위를 최소한으로 축소 (지방자치법 제245조)		
	지방	국가가 정한 기준에 맞게 생활보호사업을 실시	① 국가가 정한 기준에 맞게 생활보호사업을 실시 ② 국가의 기관위임사무제도 폐지로 업무실시에 따른 재량 확대		

자료: 지방분권추진법(地方分権推進法) 제4조, 후생노동성(2005) 생활보호 및 아동부양수당에 관한 문제제기 (生活保護及び児童扶養手当に関する問題提起)를 참고로 작성

- O 우리나라도 공공부조나 사회안전망사업이 아닌 경우 지방의 자율성을 대폭 확대하여 지역 스스로 고민해서 만들어진 지역 맞춤형 사회복지서비스를 실시할 필요가 있음
 - 예를 들어서 공단이나 제조시설이 많은 산업도시이기 때문에 맞벌이 부부들의 비율이 높은 지역이라면 아동 각각에게 지원되고 있는 현재의 보육수당은 축소시키고, 24시간 운영하는 양질의 어린이집을 설립하고 우수한 보육교사를 영입하는 것임
 - 이를 통해 야간근무나 3교대 근무를 해야 하는 부모들이 어린 영아들도 마음 놓고 24시간 동안 아이를 맡겨 놓을 수 있다면 만족도가 높아질 것임
- 또는 지자체 사회복지담당 공무원들을 좀 더 확보하여 지역 내 인구구조나 가정들의 구체적인 현황파악을 통해서 60세 이상 노인들 중 건강하고 일에 대한 욕구가 있는 경우 맞벌이 가정과 연계함으로써 지역 내 맞벌이 가정 아이들의 안전망, 아이 돌봄, 노인취업이라는 3가지를 동시에 해결할 수도 있을 것임

- O 그리고 기초생활수급자 지방비 20% 예산에 대해서도 만약 저소득층의 비율이 높은 지역이라면 사회적기업을 육성하는 데에 예산을 투입하여 기초생활수급자나 장애인의 고용을 조건으로 보조금을 지원, 고용을 동반한 지역복지정책을 추구해 볼 수 있을 것임
 - 특히 저소득층이 많을수록 독거노인이나 저소득 장애인기구 비율이 높을 수 있으므로, 이들의 생활을 돕는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기업 등과 연계해도 될 것임

참고문헌

김재훈(2011), "미국의 신재정연방주의와 사회복지분야 포괄보조. 「2011년 지방재정세미나」

이재원(2011), "지방재정에서 사회복지비 지출의 현황과 특성 분석", 지방재정과 지방세

이재원(2013). 사회복지 국고보조금의 개선방안 수행을 위한 인터뷰

이채정(2011). 사회복지분야 국고보조사업의 문제점 및 개선과제

임성일·하능식·김성주(2012), 국고보조사업의 국고보조율 운영실태와 개선과제, 지역발전위원회

최철호(2012), "지방자치단체의 중앙정부 정책결정과정 참여방안"

厚生労働省WEB. 生活保護費の手続き流れ

URL:http://www.mhlw.go.jp/seisakunitsuite/bunya/hukushi_kaigo/seikatsuhogo/seikatuhogo/index,html

財務省丰計局(2012) 福祉保護予算(生活保護、年金等) 報告資料 生活保護法

URL: law.e-gov.go.jp/htmldata/S25/S25HO144.html

최근 간행물

2013

통권 469	지방 3.0 실현을 위한 추진체계와 전략 연구
통권 470	정부간 인사교류의 활성화 방안
통권 471	지방의회 의정활동 역량강화 방안
통권 472	지방자치단체 외부 인적자원 활용 방안
통권 473	지방자치단체의 조직운영 자율성 강화 방안
통권 474	시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시민과 정부의 역할
통권 475	새마을운동을 통한 마을공동체 활성화 방안
통권 476	읍면동의 근린자치기능 강화방안
통권 477	중앙-지방 간 협력체계 강화방안
통권 478	지방자치단체의 유비쿼터스형 주민안전망 구축방안
통권 479	지방자치단체의 산림재해 주민안전망 구축 방안
통권 480	지방자치단체의 생활안전(4대악) 역할 및 대응시스템 구축방안
통권 481	지방재정관리체계 개선방안—자치단체 재정분석 및 재정공시제도 중심으로—
통권 482	지방세 비과세·감면제도의 개선방안
통권 483	지방재정 운영의 투명성 강화 방안
통권 484	보통교부세 재정형평화기능 강화방안
통권 485	사회복지 국고보조금의 개선방안 : 차등보조율을 중심으로
통권 486	지방자치단체 주도의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업의 개선방안
통권 487	외국인 밀집지역의 지역 공동체 활성화 방안
통권 488	지방분권형 특화산업 육성방안
통권 489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일자리 불균형 해소방안
통권 490	생활안전형 보행환경정책 개선방안
통권 491	지역확성화를 위한 전통시장 육성방안

통권	458	지방자치단체 조직운영시스템의 다양화 방안
통권	459	지방자치단체 외부인재풀의 구성과 활용 방안
통권	460	다문화사회 정착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이주민정책 개선방안
통권	461	지방자치단체 부단체장제도의 다양화 방안
통권	462	지방자치단체의 사회적 자본 측정 및 증진방안
통권	463	중앙—지방간 사회복지 재정부담 조정방안
통권	464	지방투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지방투융자심사제도 발전방인
통권	465	고령화 · 저성장시대의 지역발전 투자전략
통권	466	지역쇠퇴분석 및 재생방안
통권	467	지역공동체 주도의 발전전략 연구
연구 <i>:</i> (통권	_	새로운 지방예산제도

통권 451	지방자치단체의 협력적 거버넌스 재설계 방안
통권 452	지방자치단체의 서비스공급 다원화 전략
통권 453	지방자치단체의 관리역량 강화 전략
통권 454	지방자치 선진화를 위한 지방재정 건전성 강화 방안
통권 455	창조적 지역발전 전략
통권 456	지역주도의 일자리 창출전략
연구총서 (통권 457)	지방세제의 선진화 - 자율성과 책임성 제고

